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6. 3. 17(목)	
		작 성 문 의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신봉일 / 사무관 박정민 T. 044-200-1731
엠바고	* 즉시 사용		

조세심판원, 2016년도 첫 ‘지역 순회심판’ 실시

- 세종시에서 멀리 있는 청구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3월 24일(국세)과 3월 29일(지방세) 서울에서 원거리 주민을 위해 청구인을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다.
 - 지역 순회심판은 세종시 개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조세심판원의 중점 추진목표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이미 시행(13.2월 이후)하고 있으나,
 - 지역 순회심판을 통해 소액사건(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 이외의 일반 조세심판사건 청구인도 거주지(소재지)와 가까운 곳에서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조세심판원은 매분기 세종시 이외의 지역별로 지역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사건담당자와 담당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현장확인조사제도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 붙임 : 1. 지역 순회심판 개요
2. 납세자 참여확대 제도

참고 1

지역 순회심판 개요

1] 개요

-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조세심판원의 중점 추진목표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제도임
- * 조세심판관회의
 - 분야별 7개 심판관회의 운영 : 내국세 5, 지방세 1, 관세 1
 - 각 4인의 심판관으로 구성(상임 2인, 비상임 2인)

2] 연혁

- '13.2월부터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에 대해 순회심판제도를 시행
 - * 소액사건 : 청구세액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 1천만원) 미만 사건
- '15.10월 수원, 부산 지역에서 일반사건(청구세액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 순회심판 시범실시
 - 올해부터 매분기 세종시 이외의 지역별로 순회심판 확대 실시 예정

3] 개최 실적

(단위 : 회)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현재
소액사건	18	24	27	5
일반사건	-	-	2	-

* 개최 지역 : 소액사건(서울 창성동 별관), 일반사건(수원, 부산)

참고 2

납세자 참여확대 제도

구 분		내 용
의견 진술 제도	직접 의견진술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 등의 직접 진술
	영상의견진술 · 컨퍼런스 콜	지방 거주 등으로 직접 진술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영상회의장비를 이용하여 진술
	이해관계인 진술	사실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경우도 출석 진술 허용
지역 순회심판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직접 의견진술 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실시
조세심판관회의 자료 사전열람제도		작성된 조세심판관회의 자료(안건)를 청구인에게 사전열람시켜, 본인 주장 등의 적정 반영 여부 확인 기회 제공
현장확인조사		지방의 영세심판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심판서비스
심판진행 상황 메시지(SMS) 통보		조세심판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통보 * 접수→심판관회의 개최일시→발송
심판결정서 전면 공개		조세심판 결정서는 예외 없이 공개 (인터넷 검색 가능)하여 청구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이 활용